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위원의 비례대표 전환〉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20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5.
3. 회 부 일 : 2025. 1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1884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제2편 제6장 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및 제78조제1항 삭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회의의원 중 교육의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교육의원 정수 5명을 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 비율 확대를 통해 비례대표의원 정수로 흡수하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및 제78조제1항 삭제).

1. 교육의원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안 제36조 등)

현행	개정안
제36조(도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별) ① 제주특별자치도회의의원(이하 “도회의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36조(도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별) ① -----정수는-----
② 도회의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회의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② -----의원정수의 100분의 30-----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종전의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종전의 교육위원수를 합한 수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도의회 의원 정수 45명을 지역구의원 32명, 비례대표의원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른 지방의회와 달리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외에 교육의원 제도를 두고 있는바,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춘 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의회 내 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교육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왔음.

다만, 2010년 2월 「교육자치법」 개정 부칙을 통해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2014년 6월 30일까지의 일몰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교육의원 직선

제가 폐지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역시 2026년 6월 30일까지를 효력 기한으로 하는 일몰 규정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사실상 사문화되는 제도에 해당하는바, 현행 교육의원 정수 5명에 대한 처리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안은 현행 교육의원 정수 5명을 비례대표의원 비율 확대(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조정)를 통해 흡수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 의원정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정수 유지를 통해 지역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한편 비례대표의석 확대를 통해 의회 내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전체 의원정수의 10퍼센트로 규정되어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한하여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할 경우 의회 구성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의원정수 유지 방안으로서 비례대표의석 확대 외에도 지역구의석 확대 등 다른 대안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조정 여부는 제주의 총인구, 인구편차 상·하한 기준,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선거구 변동

사항, 타 시·도와의 형평성,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타 시·도의원 정수 조정 사례, 지역사회 구성의 다양성 정도 및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2.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및 교육·학예 사무
의 상임위원회 승계 (안 제39조, 제63조부터 제73조, 제77조·
제78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 ----- ----- ----- ----- <u>-위원회의-</u>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u><삭 제></u>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삭 제></u>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 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	<u><삭 제></u>

현행	개정안
<u>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명으로 구성한다.</u> <u>②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u> <u>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u>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u> <u>제2절 교육의원</u> <u>제65조(교육의원 선거) ①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u> <u>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제66조(교육위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u>교육위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u> <u>· 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u> <u>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u> <u>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u> <u>사람이어야 한다.</u> ② <u>교육위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u> <u>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u> <u>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u> <u>한다.</u> 1. <u>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u> <u>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u> <u>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u> <u>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u> <u>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u> <u>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u> <u>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u> <u>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u> <u>으로 근무한 경력</u> 2. <u>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u> <u>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u> <u>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u> <u>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u> <u>「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u> <u>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u> <u>으로 근무한 경력</u>	<삭 제>

현행	개정안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①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68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u> <u>②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도의회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u> <u>③ 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6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u> <u>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68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u> <u>제70조(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 도교육감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의 재의요구와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72조(교육위원회 회의록)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의 작성·배부, 회의록의 공개, 도교육감의 회의결과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부칙	
제3조(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	

개정안은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도의 일몰·실효에 따라, 현행법 제 63조부터 제73조까지의 교육위원회 설치·구성, 교육의원 선거·자격·검 직 제한, 교육위원회의 권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괄 삭제하고, 제39조·제77조 등에서 교육위원회를 전제로 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를 정돈하려는 것임.

아울러 부칙에서 종전 교육위원회의 안건·회의록 등 사무·자료 일체를 교육위원회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의회 심사 기능이 공백 없이 일반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도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하고 교육·학예 사무를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승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사문화 규정의 정리, 법체계의 정합성·명확성 확보, 교육·학예 사무 심사의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8